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2

발의연월일: 2020. 8. 20.

발 의 자 : 임오경·서삼석·장철민

김영주 · 전용기 · 김경만

박성준 • 윤후덕 • 김민철

이수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"코로나19")로 실내·외 공공체육시설에서의 감염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이용 과 단체활동이 많이 줄어듦.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는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기에,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 도 지속적인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 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	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
수립 등) ① (생 략)	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.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
	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
	리에 관한 사항
<u>9.</u> (생 략)	<u>10.</u> (현행 제9호와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